

대학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18조에 의거, 각 대학원의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과정의 편성) ①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교과학점(24학점 이상)

- (1) 공통필수과목
- (2) 전공과목
- (3) 일반선택

나. 논문연구(2학점)

다. 보충학점(해당자)

2. 박사학위과정

가. 교과학점(36학점 이상)

- (1) 공통필수과목
- (2) 전공과목
- (3) 일반선택

나. 논문연구(4학점)

다. 보충학점(해당자)

3. 통합과정

가. 교과학점(60학점 이상)

- (1) 공통필수과목
- (2) 전공과목
- (3) 일반선택

나. 논문연구(6학점)

다. 보충학점(해당자)

② 교과목 개설은 학과에서 주관한다. 다만, 일반선택 과목은 대학원에서 주관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③ 교과목의 학점 단위는 일반교과는 3학점, 논문연구는 2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④ 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교과과정 및 최저이수학점, 교과목과 논문연구 및 연구보고 학점단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교과과정의 설정 및 개정) ① 책임교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과정의 교과목을 선정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교과과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선정된 교과목은 2년 이내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책임교수는 학과 교수회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교과목의 개설 및 폐강) ① 책임교수는 교과과정표 중에서 다음 학기에 개강할 과목을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설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문학계열 소속 학과 및 학과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각 대학원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은 정규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한다.

제5조(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전공 배정 및 변경) ① 각 대학원 학생이 학과(전공)를 지정하여 입학한 때에는 학과(전공)를 변경하지 못한다.

② 각 대학원 재학생이 전공지정 없이 입학한 때에는 둘째 학기 종료일까지 전공지원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고, 셋째 학기 개강일 후 2주내에 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셋째 학기 개강일 후 2주 이후에도 학기를 연장하여 전공의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전문대학원은 둘째학기 수강정정 기간까지 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보충과목 이수 대상자) ① 하위 과정과 학과(전공)가 다른 사람은 책임교수가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보충과목은 그 하위 과정의 교과목 중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3학점, 박사학위과정 6학점 이상으로 한다.

2. 국제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3학점, 박사학위과정 6학점 이상으로 한다.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6학점(경영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은 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전공에 입학한 사람은 보충과목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대학원 학칙」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하위과정과 학과가 다르거나 유사한 사람에 대한 보충과목 이수 및 인정학점의 한도 등에 관한 결정은 학과(전공)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충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보충과목은 수강신청학점에는 포함되나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조(보충과목의 지정) 보충과목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이수 대상자별로 교과목을 선정하고, 책임교수는 이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강신청) ① 신입생은 학기 개강 전 1주일 이내에, 재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직전 학기가 끝나기 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매 학기 수강신청 교과학점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논문)

가. 석사학위과정 : 9학점까지

나. 박사학위과정 : 12학점까지

다. 통합과정 : 9학점까지

2. 특수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무논문 석사학위) : 6학점까지

다만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은 학기당 4학점(학교현장실습교과목 신청학기에는 6학점), 보충과목은 학기당 6학점(총 28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수 가능한 교직과목은 교육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부에서 개설한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충과목을 포함하여 3학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③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을 학점의 제한 없이 이수할 수 있고 이를 수료학점에 산정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규등록 및 연구등록, 수업연한 초과자의 수강등록, 등록금 반환)

① 정규등록이란 「대학원 학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연구등록이란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학위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업료의 15%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학위취득 할 때까지 1회에 한하여 징수한다.

③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자가 학칙 제16조에 의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1. 1학점~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2. 4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④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입학일)~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개시 30일 초과~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 60일 초과~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 90일 초과	반환하지 않음

제10조(논문연구 및 연구보고) 논문연구란 지도교수가 제시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교과로써, 석사학위과정에서는 최종 학기 2학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최종 두 학기 각 2학점, 통합과정에서는 최종 세 학기 각 2학점씩 이수하여야 한다.

① 논문연구 또는 연구보고 학점은 학생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지도하는 내용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석사학위과정은 최종 학기 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최종 두 학기 각 2학점, 통합과정은 최종 세 학기 각 2학점씩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및 특수대학원은 [별표]와 같다.

② 논문연구 또는 연구보고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만 수강신청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1조(수강신청 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 ①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그 개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수업개시일로부터 5주 이내에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 지도교수, 책임교수 및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교과목의 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강 교과목을 취소한 사람은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취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2조(성적 평가보류) ①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I” (Incomplete)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당해학기 학위수여 예정자인 경우는 “I” 로 평가할 수 없다.

② “I” 로 평가된 성적은 담당 교강사가 추가 또는 사후 제출된 자료로 성적을 평가하여 성적 정정기간 동안 “I” 대신 평가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성적확정 후 성적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I” 는 자동적으로 “F” 로 처리되고, 이후는 성적정정원 제출에 의한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제13조(교과목 담당교수 및 담당시수) 각 대학원의 강의, 실험 및 실습을 담당하는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강의는 학기당 한 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전임교원

2. 석좌교수 및 명예교수

3.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다만 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제14조(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학기 개강일 전까지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수업)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 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시험)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학기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는 별도의 방법으로 학업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신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는 시험일자 변경원과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성적평가 방법, 입력 및 공시, 성적정정) ① 매 학기말 성적평가 방법은 「대학원 학칙」 제28조에 따른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가 종료된 후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여 성적을 부여하고, 시험기간 종료 후 각 대학원이 정한 기간 내에 성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기간 종료 후 각 대학원이 정한 기간(이하 “성적 공시기간” 이라 한다)까지 학생의 성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제3항의 성적 공시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성적을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 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이의 신청을 받은 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성적공시기간 내 성적을 정정하여야 하며, 성적은 성적 공시기간 종료 후 확정된다.

⑥ 확정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착오(입력착오, 오기 또는 누락)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확정 후 7일 이내에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와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성적평가 자료 보관) ① 답안지, 과제물, 출석상황 등 성적평가 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10년간 직접 관리·보관한다. 다만 비전임교원의 경우 소속 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보관한다.

② 원본 보관이 어려울 경우 전자매체 등을 활용하여 증빙 가능한 형태로 대체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9조(재수강) 학생은 C+ 이하 등급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수강에 의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확정된 때에는 이미 취득한 성적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0조(강사추천) 학과책임교수는 교과 운영상 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강 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학술교류협정대학 교과목 및 학점인정) ① 「대학원 학칙」 제24조제2항에 의거 협정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명과 학점은 그대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성적(평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의 협정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명은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정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소속 학과책임교수의 확인으로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교과과정 및 교과목 등록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 ③ (적용례)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교과과정 및 교과목 등록에 관한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육대학원 및 법무대학원 교과목 구분 및 최저이수 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재입학생 또는 복학생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대학원별 교과구분 및 최저이수학점

1. 국제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글로벌통상금융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공공정책전공			글로벌통상금융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글로벌다문화전공 공공정책전공		
구분	과목	학점	구분	과목	학점
공통필수	2	6	공통필수	2	6
전공선택 (본인전공 과목 최소 2과목 이수)	6	18	전공선택 (본인전공 과목 최소 4과목 이수)	10	30
논문연구	1	2	논문연구	2	4
합 계	9	26	합 계	14	40
글로벌다문화전공					
구분	과목	학점			
공통필수	2	6			
전공필수	3	9			
전공선택	3	9			
논문연구	1	2			
합 계	9	26			
<p>※국제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은 논문학위과정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에는 무논문학위과정을 둔다. ※본인의 전공에서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선택과목 6학점(법무부인증 다문화 2급전문가 자격증 희망자는 제외),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선택과목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석사학위과정의 글로벌다문화전공자는 전공필수 9학점, 전공선택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글로벌다문화전공자가 법무부 지정 다문화 사회전문가 2급 자격인정 수료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자격 : 본 대학원 글로벌다문화전공으로 석사학위 취득자 혹은 글로벌다문화전공 박사과정 수료자).</p>					

무논문석사학위과정					
글로벌통상금융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공공정책전공			글로벌다문화전공		
구분	과목	학점	구분	과목	학점
공통필수	2	6	공통필수	2	6
			전공필수	3	9
전공선택	8	24	전공선택	5	15
연구보고	1	2	연구보고	1	2
합 계	11	32	합 계	11	32

2. 특수대학원

(단위 : 학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공통과목 : 4이상	공통과목 : 12	공통기초 : 6	전공필수 : 6	전공필수 : 6	전공필수 : 12
전공과목 -논문 : 20이상 -무논문 : 24이상	전공과목 -논문 : 12 -무논문 : 18	전공과목 -논문 : 18 -무논문 : 21	전공선택 -논문 : 18 -무논문 : 21	전공선택 -논문 : 18 -무논문 : 24	전공선택 -논문 : 12 -무논문 : 15
-논문연구 : 4 -연구보고 : 2	-논문연구 : 2 -연구보고 : 2	-논문연구 : 2 -연구보고 : 3	-논문연구 : 2 -연구보고 : 3	-논문연구 : 2 -연구보고 : 2	-논문연구 : 2 -연구보고 : 2
-논문 : 28 -무논문 : 30	-논문 : 26 -무논문 : 32	-논문 : 26 -무논문 : 30	-논문 : 26 -무논문 : 30	-논문 : 26 -무논문 : 32	-논문 : 26 -무논문 : 29
※ “논문”은 논문학위과정을, “무논문”은 무논문학위과정을 말한다. ※ 교육대학원의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별도의 ‘교원자격 검정기준’의 취득기준에 따른다.					